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1. 26 선고 2021나6007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1. 26 선고 2021나60074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5. 25 선고 2020가단239438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

담당변호사 김진우, 하희진

피고, 항소인1.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

2. 주식회사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현

담당변호사 김경태, 김은미, 한석영

변론 종결2021. 10. 8.

판결 선고2021. 11. 26.

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5. 25. 선고 2020가단239438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,273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[항소취지]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(다만 제1심판결 4쪽 11번째 줄의 '갑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'를 '갑 제1호증의 기재에'로, 같은 줄의 '원고들이'를 '원고가'로 각 고친다)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오연정

판사허준서

판사강희석